

명동예술극장 사용허가 특수조건

제 1 조(목적)

이 조건은 (재)국립극단(이하 '극단'이라 한다)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준칙으로서 사용허가의 부대조건으로 한다.

제 2 조(판매품목 및 가격)

- ① 사용자는 영업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을 시행 전에 극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전항의 영업 판매품목 중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는 영업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. 또한 극단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판매품목 및 가격의 경우 극단에서 판매금지 및 가격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사용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3 조(요금표의 부착)

사용자는 별도로 극단이 승인한 판매가격표를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신고 등의 이행)

- ① 사용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신고, 허가, 면허 및 영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허가 승인 후 즉시 명동예술극장을 주소지로 하는 사업자 등록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자의 명의를 동일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운영시간)

- ① 운영시간은 오전08:00부터 오후10: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및 단축운영이 필요한 경우 극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극단의 사정에 의거 연장 및 단축 운영을 요청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정규 운영시간 및 변경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가 임의로 편의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자가 임의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 6 조(기본시설 및 물품)

- ①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물품(실내 인테리어, 주방기구 등)은 극단과 사용자간에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- ② 허가재산의 규격변경 및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극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사용수익 허가한 장소에 설치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 시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이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사용자(낙찰자)가 부담하여야 하며,

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및 물품에 투자된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
- ④ 사용수익허가 만료 또는 허가 취소 이후에도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시설 및 물품 등을 극단에서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의 민·형사적인 책임과 경비부담은 사용자가 진다.

제 7 조(시설물 설치제한)

- ① 사용자는 영업상 필요로 하는 가구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규격은 사전에 극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사용자는 극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원형을 변경하는 시설물이나 광고물을 설치 또는 부착하지 못한다.

제 8 조(종사원 관리)

- ① 편의시설 운영은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어떠한 이유로도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② 편의시설 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관계 법규에 의거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를 채용하여야 한다.
- ③ 편의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근무복을 착용하여 항상 단정한 몸가짐으로 이용객에게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.
- ④ 편의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이용객에게 불손한 언행 등으로 극단의 시정 요청을 받을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이용고객에 대한 건의 사항이나 약속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청 결)

- ① 사용수익허가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.
- ② 편의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안 전)

- ① 사용자는 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, 가스, 화기 및 기타에 의한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.
- ② 사용자는 물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서는 극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11 조(관리 및 감독)

- ① 사용자는 편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극단으로부터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.
 - 1. 가격의 조정
 - 2. 취급 품목 선정 및 조정
 - 3.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

4. 시설물 개선에 관한 사항

제 12 조(기타 금지사항)

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극단의 관리상 지장을 주거나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
2. 기타 극단 운영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

제 13 조(지시·명령의 준수)

사용자는 본 규정과 국유재산 사용허가조건은 물론, 기타 필요로 인하여 극단이 요청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14 조(불이행에 대한 제재)

- ① 사용자 또는 업체의 종업원이 관계법령, 허가조건, 특수조건 및 극단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극단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국유재산 사용정지(영업정지)를 명할 수 있으며, 동 기간 중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② 국유재산 사용정지(영업정지)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	4회 위반
지시사항 및 허가조건 위반	경 고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4일	허가 취소